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6127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12.2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9.27.

www.jjbbb.co.kr

[한옥마을]

정보공개서

(주)풍년에프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풍년에프씨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 220, 915호(옥길동, 우성테크노파크 I)

대표전화번호 : 070-4791-1088

가맹사업부전화번호 : 1533-9794

팩스번호팩스 : 050-4199-908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서류

[별첨1] 필수품목 및 부수품목

[별첨2] 메뉴별 권장가격

[별첨3]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4]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별첨5] 가맹본부 재무제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풍년 에프씨	한옥마을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 220, 915호(옥길동, 우성테크노파크 I)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 09. 27	2016-09-29	김현기	070-4791-1088	050-4199-9082
	법인등록번호	110111 - 6184371	사업자등록번호	496-88-0064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대표이사)	김현기/ (주)풍년에프씨	한옥마을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 220, 915호 (옥길동, 우성테크노파크 I)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현기	070-4791-1088	050-4199-9082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한옥마을'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한옥마을	
상 호	한옥마을 OO점	-

상표(서비스표)		상표등록번호 : 4012651080000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상기 한옥마을은 대표 영업표지이며 가맹점 사업자는 매출증대를 위해 계약시 또는 계약 도중에 추가 가맹금 없이 콜라보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라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에서 일부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콜라보 네임 : 한옥마을 비빔밥&술밥, 한옥마을 비빔밥&전주콩나물국밥, 한옥마을 비빔밥&죽 등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017,920	851,905	166,015	2,025,868	5,963	-757
2022년	1,652,724	1,348,694	304,029	2,711,479	22,920	8,014
2023년	1,033,518	672,789	360,728	3,915,460	68,712	57,915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현기	대표이사	2016.10 ~ 현재	(주)풍년에프씨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 본부	(주)풍년에프씨	가맹사업 경영	2016년 5월~현재	한옥마을 (등록번호:20161275)
			자진취소	비비밥(등록번호:20212063)
			자진취소	풍남옥(등록번호:20213585)

※ 당사는 2023년 1월경 한옥마을 전주비빔밥에서 한옥마을로 영업표지를 변경하였습니다.

※ 상기 풍남옥은 2023년 4월경, 비비밥은 2024년 4월경 자진취소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외장, 인테리어, 영업표지	2016.09.05 2017.06.30	4020160067974 4012651080000	김현기	2027.06.30

※ 당사는 상기 김현기로부터 상표 사용권 계약을 통해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았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I.4의 콜라보 네임을 사용 시에도 상기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II. 가맹본부의 [한옥마을]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6년 9월 10일(제1호 가맹계약 체결일)

* 직영점 시작일 : 2012년 07월 01일

2. 해당 가맹사업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풍년 에프씨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김현기	2016.5 ~ 2019.5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50길 11 축전빌딩 2층(논현동1-5)
			2019.5 ~ 202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A동 1904-2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021.1 ~ 2022.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A동 B107-2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
	한옥마을		2023.01~ 현재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 220, 915호 (옥길동, 우성테크노파크 I)

※ 당사는 2023년 1월경 한옥마을 전주비빔밥에서 한옥마을로 영업표지를 변경하였습니다.

3. [한옥마을]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옥마을	한식	비빔밥, 솥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7	49	8	50	45	5	51	47	4
서울	9	8	1	9	9	-	10	10	-
부산	5	4	1	4	3	1	3	2	1
대구	4	3	1	3	2	1	2	2	-
인천	5	5	-	5	5	-	6	6	-
광주	-	-	-	-	-	-	-	-	-
대전	1	-	1	-	-	-	-	-	-
울산	3	3	-	2	2	-	2	2	-

세종	1	1	-	1	1	-	2	2	-
경기	15	14	1	15	14	1	17	15	2
강원	-	-	-	-	-	-	-	-	-
충북	3	3	-	1	1	-	1	1	-
충남	3	2	1	4	3	1	3	2	1
전북	2	2	-	2	2	-	1	1	-
전남	1	1	-	-	-	-	-	-	-
경북	-	-	-	-	-	-	1	1	-
경남	5	3	2	4	3	1	3	3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한옥마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2	7	-	-	1	49
2022	49	10	-	14	2	45
2023	45	8	1	5	1	47

6. [한옥마을]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업 종	사업시작일	가맹점수 / 직영점수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비비밥	외식(한식)	자진취소	-/-	-/-	-/-
			20212063			
	풍남옥	외식(한식)	자진취소	-/-	-/-	1/-
			20213585			

※ 상기 풍남옥은 2023년 4월경, 비비밥은 2024년 4월경 자진취소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한옥마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47	246,710	20,148	512,727	126,155	36,312	1,037	45	
서울	10	288,964	44,079	504,621	126,155	147,975	12,517	9	
부산	2	해당없음(5개 미만)						2	
대구	2	해당없음(5개 미만)						1	
인천	6	248,314	28,111	302,760	60,552	161,406	6,762	6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2	해당없음(5개 미만)						2	
세종	2	해당없음(5개 미만)						2	
경기	15	224,555	13,581	457,281	84,271	36,312	1,037	15	
강원	-	-	-	-	-	-	-	-	
충북	1	해당없음(5개 미만)						1	
충남	2	해당없음(5개 미만)						2	
전북	1	해당없음(5개 미만)						1	
전남	-	-	-	-	-	-	-	-	
경북	1	-	-	-	-	-	-	1	
경남	3	해당없음(5개 미만)						3	
제주	-	-	-	-	-	-	-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POS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점주가 포스에 입력하지 못한 부분은 매출 산정 과정에서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영업 활동한 가맹점의 월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활용하는 중, 2023년 영업을 개시하여 영업 월수가 6개월 미만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47개가 아닌 실제 45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량,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로스율, 시공 매뉴얼 준수 정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한옥마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7	1,296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한옥마을>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선전비		(비공개)	15,412		(비공개)	-
판매촉진비	-	-	-	-	-	
합계			15,412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2 에 따라 귀하의 예치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프랜차이즈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주)SIG서울보증보험	
대표번호	1670-7000	
보험계약자	(주)풍년에프씨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입금가맹금 및 보증금 범위 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 보험금신청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1)개월 소요

귀하는 가맹계약체결일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나 당사가 위 표의 보험인과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한옥마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수도공사, 소방시설, 냉난방기기, 닥트공사,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9,900	계약체결 일 (또는 영업 개시일)	영업 개시 전	.open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노하우 및 인력, 매뉴얼, 정보제 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 음(소멸성)	1. 가입비(6,600) 2. 영업, 운영노하우, 가맹점운영 권부여 3.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매뉴 얼 및 자료제공(3,300) * 계약 해제 시 당사에서 정한 기 준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가맹비 (배달매장)	5,500	계약체결 일 (또는 영업 개시일)	영업 개시 전	.open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노하우 및 인력, 매뉴얼, 정보제 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 음(소멸성)	1. 가입비(3,300) 2. 영업, 운영노하우, 가맹점운영 권부여 3.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매뉴 얼 및 자료제공(2,200) * 계약 해제 시 당사에서 정한 기 준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가맹비 (샵인샵)	3,300	계약체결 일 (또는 영업 개시일)	영업 개시 전	.open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노하우 및 인력, 매뉴얼, 정보제 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 음(소멸성)	1. 가입비(1,100) 2. 영업, 운영노하우, 가맹점운영 권부여 3.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매뉴 얼 및 자료제공(2,200) * 계약 해제 시 당사에서 정한 기 준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교육비	3,300	계약체결 일 (또는 영업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시일)	계약해지		
총계	13,200	-	-	-	식당, 푸드코드 (기본형)인 경우
	8,800	-	-	-	배달매장인 경우
	6,600	-	-	-	샵인샵인 경우

- * 영업개시일에 지급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 귀하가 기존 가맹점의 양수인인 경우 양수인으로서 당사에 지급할 양수가맹비는 상기 가맹비와 동일합니다.
- * 상기 유형 중 식당, 푸드코드가 기본형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1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3,000	계약체결일	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로얄티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잔존채무, 손해배상액등과 정산 후 반환

- *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5,000천원)으로 대체시 식자재 및 가맹본부에 지급 비용이 보증보험 금액(5,000천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본사로부터 식자재 등 발주가 중단될 수 있으며, 즉시 보증보험 금액을 사용량에 따라 최고 금액으로 보증보험 금액을 즉시 증액하여야 합니다.
- * 영업개시일에 지급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3) 입금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는 가맹계약체결일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나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2 에 따라 귀하의 예치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프랜차이즈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있어 당사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입금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금일천육백이십만원(₩16,200,000)(VAT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포함)	비고
가맹비	9,900	부가세포함
교육비	3,300	부가세포함
(현금)보증금	3,000	부가세없음 (보증증권 대체 가능)
합계	16,200	보증금 보증증권 대체시 13,200천원

※ 가맹비 : 배달매장 5,500천원, 샵인샵 3,300천원 적용시 합계금액은 달라짐.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	92,150	3,072	-	-	-
인테리어	가맹본부	55,200	1,840	계약시: 50% 증도금: 30% 완공시: 20%	미공사시	99 m ² (30평 기준)
간판		4,950				-
주방 집기/기기		26,500		계약시	미공급시	-
초도물품		2,200				-
식자재 등 (원 · 부재료, 완제품)		3,300				-
별도 추가사항	도시가스공사, 전기증설, 화장실공사, 닥트공사, 냉난방설비, 수도시설, 간판공사, 외부공사, 가구공사, 상하수도 유입공사, 소방설비, 음향기기, 철거비용 등,내부 DP용품 각종인허가 공사, 포스 등					

※ 위 표의 금액은 로드샵 기준이며, 특수상권(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기차역, 터미널, 극장 등등)은 해당 특수상권의 상황(특수상권 임대인의 요구사항, 작업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별도 추가사항은 해당 매장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비용으로 추가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을”이 인테리어를 직접시공 시 또는 “갑”의 협력업체로부터 인테리어 진행할 때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후 감리비는 평(전용면적)당 220천원(부가세포함)이며 감리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옥마을 전주솔밥, 한옥마을 전주비빔밥&가마솥밥, 한옥마을 전주비빔밥&솥죽, 물갈비 등으로 콜라보 네임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주방 집비/기기에 ‘솥밥기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한국마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GYEONGGI-DO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50%(가맹본부):50%(가맹점사업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브랜드이미지, 상품광고
	가맹본부	50%(가맹본부):50%(가맹점사업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가맹본부	100%(가맹본부):0%(가맹점사업자)	-	-	-	가맹점 모집광고 시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POS사용료	협력업체	0~55	매월 말일	-	-	실시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총매출의 2%~4% 또는 정액 (총매출=홀매출+포장매출+배달매출 등 매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	매월 말일	-	-	- 로드샵 3.3m ² 전용면적*2만원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불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금으로 반환하지 않음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 개선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로열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업체의 식자재 전용제품(필수제품) 사용 여부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호간의 발전적 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감액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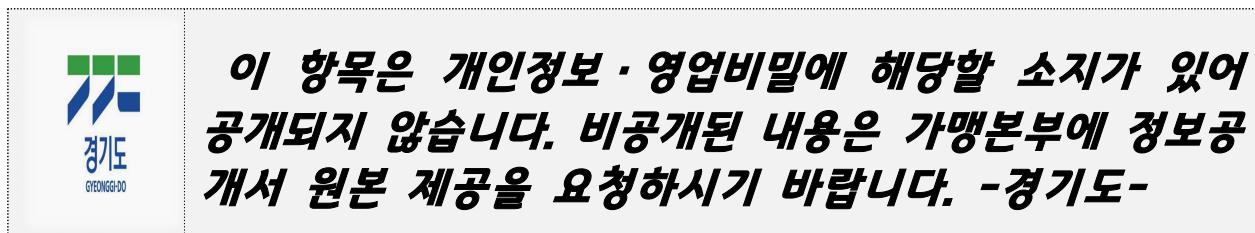
전용제품사용 기준	로열티(특수상권)	로열티(로드샵)(부가별도)
총매출 *15% 이상	2%	7,000원 * 3.3m ² 당(전용면적)
총매출 * 10%~15% 미만	2.5%	10,000원 * 3.3m ² 당(전용면적)
총매출 * 5%~10% 미만	3%	13,000원 * 3.3m ² 당(전용면적)
총매출 * 1%~5% 미만	3.5%	15,000원 * 3.3m ² 당(전용면적)
미 사용시	4%	20,000원 * 3.3m ² 당(전용면적)
로열티 최저 기준	로열티가 30만원(부가세별도) 이하인 경우 30만원(부가세별도) 적용	

- ☞ 브랜드 메뉴, 맛의 표준화를 위해 전용제품(필수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전용제품 사용에 따라 매월 로열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로열티는 매월 마감하여 변동되는 금액을 매월 CMS 자동이체 또는 오프라인 PG(벤사)로 청구하여 인출합니다. 가맹계약 시 CMS자동이체 및 오프라인 PG(벤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당사는 귀하가 전용제품을 15% 이상 사용하여 로열티 최저 2%를 권장합니다. 전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노동력 절감, 인력구인 수월, 유tility(전기, 수도, 가스)비 절감,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이 가능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함)의 2023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식재관리	식자재 적정수량 체크 및 유통기한 준수여부 체크	분기별 1회	문의 : 관리팀 (070-4791-1088)
위생관리	가맹점의 위생상태 관리 점검 및 직원의 위생상태 점검		
회계처리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실시		
매뉴얼 준수	전체프로모션 시행여부, 메뉴판 사용 및 접객력 체크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는 재가맹비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재가맹비	5,500	재계약 체결시	반환불가	재계약시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
비 고				
"갑"은 직전 계약기간 동안 "을"의 매뉴얼의 준수정도, 영업실적 및 영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가맹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호와 상관없이 당사의 매뉴얼 및 레시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한옥마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계약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IV-1-3)의 가맹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해지)시까지 성실하게 가맹점 사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의 종료(해지)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거점지역"내에서 한옥마을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계속되도록 가맹본부 또는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의 협조를 거절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계약의 종료(해지)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전시 또는 게시된 간판 및 외장 간판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 “영업표지”를 영업소 기타 영업설비로 부터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의 “영업표지”의 제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 “영업표지” 제거 전일 기간 지체일수*삼십만원/일 금액을 그 자연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⑥ 계약 종료(해지)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 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한옥마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별첨 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품목은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제조, 공급, 생산,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한옥마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름/상호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한옥마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당사는 [한옥마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는 [한옥마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1]	당사가 지정한 메뉴 이외의 품목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 및 매장 등에 공급 및 유통, 사용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해지, 로열티 1% 적용부분 오픈시부터 매출*로열티 3%적용 또는 1천만원 배상중 상위 금액	
다른 가맹점사업자				
온라인판매 및 유통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에 명시된 내 역)	가맹본부가 권장한 가격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이메일, 유선, 팩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메뉴별 권장가격은 [별첨 2]와 같습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8.의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업종	한옥마을	해당 없음

※ 귀하가 콜라보네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당사의 가맹사업 영업표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직선 반경 1,000m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울렛, 공공기관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특수상권은 거리에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간접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간접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른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한옥마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라목)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①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한옥마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티몬, 위메프 등에서 한옥마을 매콤 두루치기, 한옥마을 간장두루치기, 한옥마을 마늘석갈비, 한옥마을 콩나물국밥, 한옥마을 황태해장국 총 5개 품목을 온라인 판매방식으로 공급합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6.3	13.6	0	0.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③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조 제2항 3호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3호 나목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3호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제2항 3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26조 제1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제26조 제1항 2호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26조 제1항 3호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제26조 제1항 4호

또는 상표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26조 제1항 5호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26조 제1항 6호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또는 대금지급이 연체된 경우	제26조 제1항 7호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 9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 10호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 11호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26조 제1항 1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 13호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 14호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비용 미결제 한 경우	제26조 제1항 1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타가맹점에 공급 또는 경쟁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제26조 제1항 16호
○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26조 제1항 17호
○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 18호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 19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제1항 20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 제1항 21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제26조 제1항 22호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제26조 제1항 23호
○ 특약위반 시	제26조 제1항 24호
○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4조 제1항 2호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 제2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4조 제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	제34조 제2항 3호

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4조 제2항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 제2항 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 제2항 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4조 제2항 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4조 제2항 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4조 제2항 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070-4791-1088)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계약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IV-1-3)의 가맹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	----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떡갈비'를 판매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070-4791-1088)
--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월26일 이상	문의: 관리팀 (070-4791-1088)

-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수의 제한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4명(30평 기준)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070-4791-1088)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070-4791-1088)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1회/분기	본사 관리팀 (070-4791-1088)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과 별도로 당사와 귀하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약정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이미지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50% (가맹점 수로 균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분담액 명세서를 통지 → 가맹사업법 상의 동의 절차 진행 → 통지 후 7일까지 가맹점분담액 입금 → 광고 시작 → 가맹점사업자 사용내역 요청시 당사는 제시함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모집+상품광고	광고비의 50%	50% (가맹점 수로 균분)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고)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사업법 상의 동의 절차 진행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인	개별 행사, 광고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물제작, 인쇄물제작 등 홍보물, 홍보소모품, 경품 등을 제작 시에는 미리 가맹본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시 위약벌, 위약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 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5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35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금삼십만원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24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일천만원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VAT포함/99.17m²(3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D - 30	
상담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D - 29~28	
정보 제공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기타 가맹희망자 요청 자료 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및 보관	D-15(1일)	
가맹금 입금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입금		
점포설계/설계	- 투자비 산출	D-14(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D-14~12(2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D-12~1(11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6~1(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p8~p9 참조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 자율 분쟁 협의회를 통하여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
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
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기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시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알짜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p>로부터 3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 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 본부 부담액을 분 할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070-4791-108 8)
가맹점사업자 요청 및 특수상권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문의: 관리팀 (070-4791-108 8)

임대인 요청 시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u>소요비</u> <u>용 등 포함</u> 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u>서면으로</u> 제시 하고 이를 설명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5.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등	이론, 실습	개점 전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실습	수시	-
특별 교육	필요시 내용 통보	이론, 실습교육	필요시	필요시 실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	3,300(1인기준)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필요시 실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 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오픈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의 한옥마을 관련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부산	애플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01 2층(괘법동, 서부버스터미널)
2	경기	영통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롯데마트 영통점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1층)
3	충남	신세계천안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4층(신세계백화점 아라리오점)
4	경기	수지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38(성복동) 성복역 롯데마트수지점 2층 한옥마을 비빔밥&술밥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4년 1개월	1,502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50,699	직영점 POS 기준

별첨 1

■ 간판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주방 집기/기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초도물품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식자재 등(원 · 부재료, 완제품)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1-1 공급가격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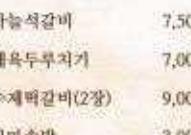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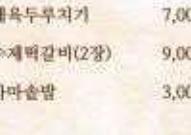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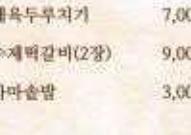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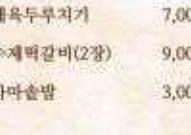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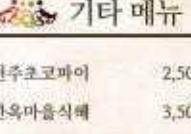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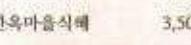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 한옥마을 메뉴 및 권장가격

한옥마을 비빔밥 & 속밥

정식	가마솥밥 류	사이드 메뉴					
 한옥마을 정식 전나물비빔밥, 순두부찌개, 새우두부찌개 12,900원	 가마솥밥 정식 가마솥밥, 순두부찌개, 마늘식감비 12,900원	 마늘식감비 7,500원					
 전주비빔밥 정식 전주비빔밥, 순두부찌개, 비빔비 13,900원	 고드레비빔밥 정식 군드레비빔밥, 순두부찌개 13,900원	 제육두부찌개(2장) 7,000원					
 순두부찌개&가마솥밥 8,300원	 청국장찌개&가마솥밥 8,900원	 수제찌개(2장) 9,000원					
 콩비자찌개&가마솥밥 9,300원	 가마솥밥 3,000원						
기타 메뉴							
		 전주초코파이 2,500원					
		 한옥마을식혜 3,500원					
비빔밥	국밥 류	일품요리					
 전통전주비빔밥 9,000원	 200°C 풀술비빔밥 9,000원	 신한육회비빔밥 12,000원	 제육들솥비빔밥 9,800원	 해물나물비빔밥 11,000원	 콩나물국밥 7,500원	 오강어콩나물국밥 8,000원	 소불고기전골 15,000원

※ 2024년 1월 1일 기준(위 메뉴 외 상품은 가맹본부의 품목별 메뉴리스트 가격을 참고합니다.)

※ 점포현황, 특수매장, 로드샵, 지역별, 콜라보 네임 사용매장 여부에 따라 권장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

별첨 3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년 월 일

재무제표(2021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무제표(2022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무제표(2023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5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용)

본인은 (주)풍년에프씨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가맹점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7)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2. 수령자(가맹희망자)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 (인)

3. 제공자(가맹본부)

가맹본부명: (주)풍년에프씨 대표자명: 김 현 기 (인) 제공일: 20 년 월 일

-----절취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용)

본인은 (주)풍년에프씨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가맹점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7)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2. 수령자(가맹희망자)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 (인)

3. 제공자(가맹본부)

가맹본부명: (주)풍년에프씨 대표자명: 김 현 기 (인) 제공일: 20 년 월 일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70-4791-10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